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447
----------	-----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평창 치유의 숲 준공 후 운영·관리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운영·관리 등(안 제1조, 안 제4조)
- 나.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5조)
- 다.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575백만원 반영되었음
- 다. 합의 : 해당 기관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10. 28. ~ 2024.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487호, 산림과-6159(2024. 10. 25.)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5005(2024. 9. 27.)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5005(2024. 9. 27.)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4096(2024. 10. 24.)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9906(2024. 12. 17.)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7931(2025. 5. 26.)호]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조성한 평창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에 조성한 ‘평창 치유의 숲’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이란 평창읍 상리 일원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시설을 말한다.
2. “치유시설”이란 치유의 숲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치유센터, 치유욕장, 치유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 ·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이용료”란 군수가 치유의 숲 안에 있는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체험료”란 군수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관리자”란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업,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개발·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치유의 숲 및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휴장)
 2. 1월 1일, 설·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치유의 숲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치유의 숲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유의 숲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4. 치유의 숲 내에서 각종 상행위를 한 사람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오손 또는 멸실하여 치유의 숲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6.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7조(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신청 등)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화 또는 현장접수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체험 신청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 ③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역화폐 등으로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체험료 전액을 감면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 ④ 신청일 당일에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장료, 시설이용료 및 체험료 징수) ①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이 체험·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연구, 점검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사용하는 경우
3.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협약을 맺은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10.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2.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 군에서 운영·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숙박 이용객 및 목재문화체험장의 프로그램 체험객이 같은 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3. 체험료의 10퍼센트 감면: 1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를 적용한다.

제10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치유의 숲 시설물과 수목 등의 훼손·파손·멸실 또는 집기의 훼손·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편익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산물 판매소 · 카페 등
2.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비 고
		개인	단체	
산림 치유 프로그램	일반	5,000원	4,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1인 2시간 기준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험료 적용 -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 -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 청소년은 8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적용
	청소년	4,000원	3,600원	
체험	온열치유	10,000원	9,000원	
		(치유음료 포함)		
	다도·다례 치유	10,000원	9,000원	
		(치유음료 포함)		
	명상치유	10,000원	9,000원	
		(치유음료 포함)		
	치유음료	4,000원	3,600원	
시설	세미나실	2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

※ 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공 통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급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나. 체험일 2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체험료의 80퍼센트 환급
	다. 체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미환급

관 계 법령 발췌

□ 산림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등 비용 필요
-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운영·관리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은 수입금 및 자체재원(군비) 조달
- 수입금은 시설 운영에 따른 체험료, 대여료 발생

나. 추계 결과

○ 세입(연간기준)

구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
합계		77,500천 원	
체험료	18,000명 × 4,250원	76,500천원	
대여료	40회 × 25,000원	1,000천원	

※ 체험료 : 프로그램 운영 기본 체험료로 산정(개인, 단체)

※ 체험수 : 프로그램 연간 최대 체험객 적용

※ 대여료 : 40회/년 기준(1회/주)

○ 세출(연간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소요액	575,018	362,082	362,082	362,082	362,082	2,023,346
장비구입비	232,460					232,460
시설유지비	110,000					110,000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	232,558	362,082	362,082	362,082	362,082	1,680,886

※ 2025년 당초예산 575,018천원 확보(치유지도사 인건비(10개월), 관리원 인건비(6개월), 운영비(6개월) 기준)

※ 2026년 이후 세출예산 편성(치유지도사 인건비(10개월), 관리원 인건비(10개월), 운영비(12개월) 기준)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및 국비(산림치유지도사 인건비), 체험료 및 대여료 수입금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성모
연락처	(033) 330 - 24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77,500	77,500	77,500	77,500	310,000
체험료	-	76,500	76,500	76,500	76,500	306,000
대여료	-	1,000	1,000	1,000	1,000	4,000
세 출	575,018	362,082	362,082	362,082	362,082	2,023,346
장비구입비	232,460	-	-	-	-	232,460
시설유지비	110,000	-	-	-	-	110,000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등)	232,558	362,082	362,082	362,082	362,082	1,680,886
재원 조달	575,018	362,082	362,082	362,082	362,082	2,023,346
의존 재원	소 계	-	81,600	81,600	81,600	326,400
	보조금	-	81,600	81,600	81,600	326,4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75,018	280,482	280,482	280,482	1,696,946
	지방세					
	세외수입	-	77,500	77,500	77,500	310,000
	군비	575,018	202,982	202,982	202,982	1,389,946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025년 시범운영으로 세입이 없음.

※ 보조금 : 치유지도사(3명) 인건비 국도비 지원